

일련번호	1
------	---

감사결과 처분지시서

- 【제 목】 태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지연
- 【기 관 명】 ****과
- 【행 정 상】 주의(시정적 주의)
- 【제 정 상】
- 【지적내용】

가. 현황

- 조 례 명 : 태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
- 방침결재일 : 2017.9.8.(금) → 「조례 제정계획」
- 결 재 자 : 군수

나. 위법·부당내용

- 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(약칭 : 공공디자인법)」 제6조(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)제5항에 ‘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·시행, 제4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인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’고 규정하고 있다.
 - 그리고, 「태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정은 법령 위임 뿐 아니라 「2018.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(2017년 실적)」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필수조례 및 규제완화조례는 반드시 우선정비(공포완료)토록 기획감사실-1979(2017.2.9.)호 등으로 12회* 지시된 바, 우선 제정 공포했어야 한다.
- * 기획감사실-1979(‘17.2.9.), -3779(‘17.3.20.), -5617(‘17.4.24.), -6680(‘17.5.17.)

-8052('17.6.14.), -8131('17.6.15.), -8235('17.6.19.), -9795('17.7.17.),
-11623('17.8.22.), -12509('17.9.6.), -13362('17.9.20.), -14475('17.10.17.)

- 또한, ****과에서도 「2017년 태안군 규제개혁 점검회의」(2015. 8.25.(금)14:00, 군청 소회의실, 부군수 주재) 회의자료(P17)로 아래와 같이 향후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며, 2017.9. 8.(금)에 「¹⁾태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」에 대하여 군수 결재를 득하였고, 「법령 위임조례 정비계획 제출」(****과 -47713 ('17.9.17.), -53430 ('17.10.19.))공문 붙임에도 '2017. 12 월말까지 조례제정 완료 목표로 추진'으로 기재 되어 있다.

《2017년 태안군 규제개혁 점검회의 자료》

- ① 미정비 사유 : 해당사항 없음
- ② 향후정비계획
 - 2017. 9. : 입법예고, 법제심사, 성별영향평가, 규제개혁심의, 비용추계서 심사
 - 2017.10. : 조례규칙 심의회
 - 2017.11. : 의회 상정
- ☞ 「태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」 III. 앞으로 추진 계획에도 위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
- ※ ****과 관련 공문을 근거로 재구성 하였습니다.

- 그런데도, ****과(****팀)에서는 2017.9.8.(금) 「태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」에 대하여 군수 결재를 득한 후 감사일 현재까지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.

【처분요구】

****과장께서는 「태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 모든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시기 바라며,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관련법규 등을 연찬토록 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

1) 「태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」은 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 문서등록 대장에 미등록

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.

【신분상】

- 주의 2명